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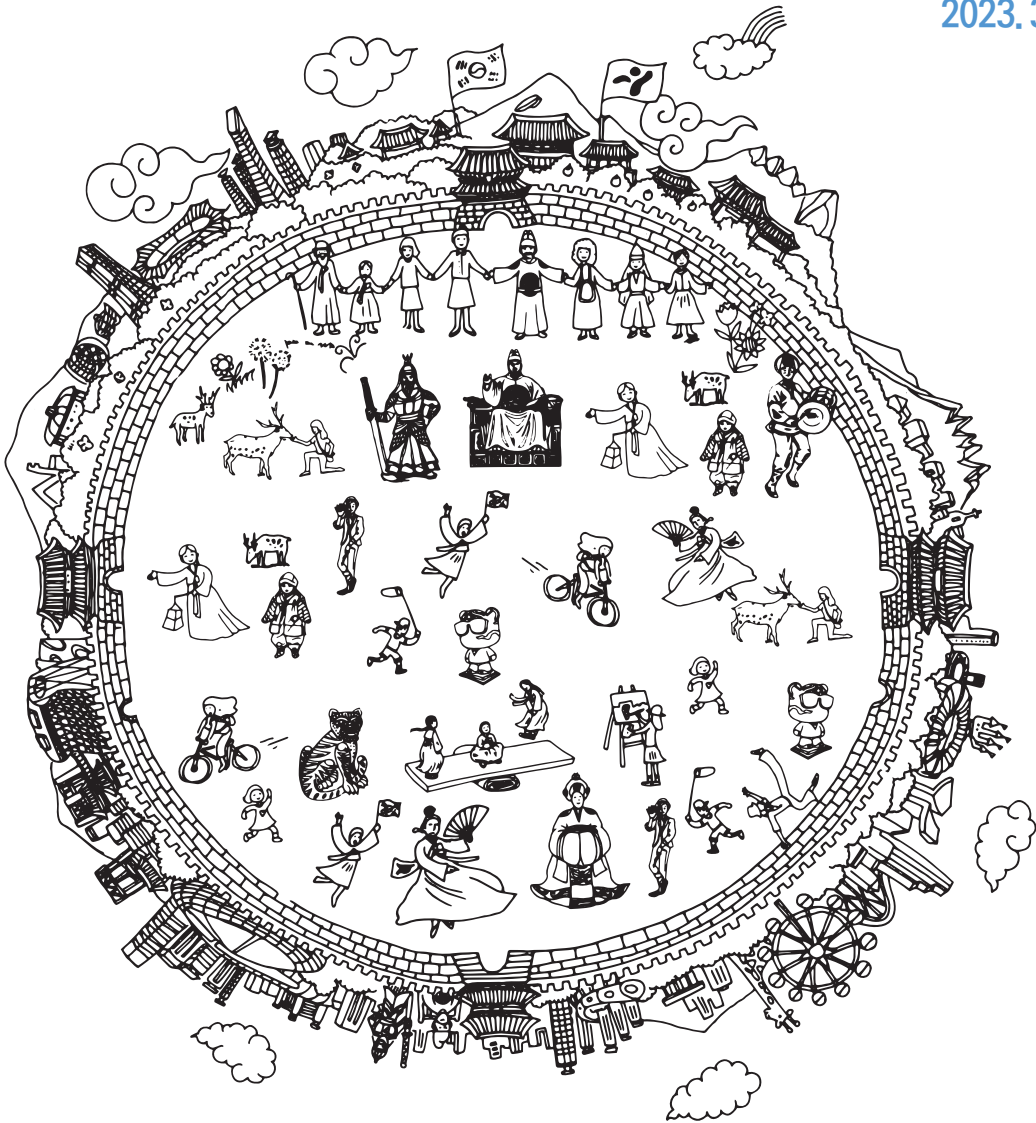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856호
2023. 3. 6.(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조 례]

제8598호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

[예 규]

제734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 3

자치법규

[조 례]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8598호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3년 3월 6일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조제목 중 “정수” 를 “수” 로 하고, 조문 중 “정수” 를 “수” 로 하며, “20명으로” 를 “15명 이상 20명 이내로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효율적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을 위해 선임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 조정

2. 주요내용

검사위원의 수를 기존 ‘20명’ 에서 ‘15명 이상 20명 이내’ 로 하고, 이에 맞추어 ‘정수’ 를 ‘수’ 로 개정함.

[예 규]

◆ 서울특별시에규 제734호

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

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3년 3월 6일

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(동영상 기록관리)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·안전 확보,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(민자사업 등 포함)
 2.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(교량, 고가, 건축물 해체 등)
 3.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
-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(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)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·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1]

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

원 도 급 계약사항	공 사 명	0000 건설공사 0공구	
	도급 계약금액		
	계약기간		
하 도 급 계약사항	공사명(공종명)	철근콘크리트공사	
	하도급계약금액		
	계약기간		
	수 급 인	상 호 및 대 표 자	
		주 소	
		상 호 및 대 표 자	
		주 소	
	하수급인	상 호 및 대 표 자	
		주 소	

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 심사지침(공정거래위원회 예규)에 의거한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며,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(하도급계약 특수조건,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, 현장설명서, 특기시방서, 공사이행특약 등)를 누락 없이 제출함을 확인합니다.

주요 불법하도급 예시

-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
-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
-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
- 발주자에게 미통보된 하도급 등

주요 부당특약 예시

-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
-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
-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 처리비용 전가
- 재시공 비용 전가 등

- 첨부 : 1.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.
 2. 현장설명서 사본 1부.
 3. 특수조건 사본 1부.
 4. 특기시방서 사본 1부.
 5.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.

*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첨부

20 . . .

수 급 인 : 00종합건설(주) 대표자 ○ ○ ○ (인)
 (주)00종합토건 대표자 ○ ○ ○ (인)
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: 000엔지니어링주식회사 ○ ○ ○ (인)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방지, 하수급인의 권리보호,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예규 일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불공정 하도급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제출 의무화(제20조제5항 신설)
- 나. 건설공사의 품질·안전 확보,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해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 의무화(제29조 신설)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